# 시정조치등취소

[서울고등법원 2014. 1. 9. 2013누14476]



## 【전문】

【원고, 항소인】주식회사 열심히커뮤니케이션즈 (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정영훈 외 3인) 【피고, 피항소인】방송통신위원회 (소송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태평양 담당변호사 류광현 외 1인) 【제1심판결】서울행정법원 2013. 5. 2. 선고 2012구합21154 판결 【변론종결】2013. 11. 28.

#### 【주문】

1

- 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- 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【청구취지 및 항소취지】1. 청구취지 피고가 2012. 6. 19. 원고에게 한 [별지] 기재 과징금 부과처분, 시정조치 및 공표명령을 각 취소한다. 2.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. 피고가 2012. 6. 19. 원고에게 한 [별지] 기재 시정조치 및 공표명령을 각 취소한다.

【청구취지 및 항소취지】1. 청구취지 피고가 2012. 6. 19. 원고에게 한 [별지] 기재 과징금 부과처분, 시정조치 및 공표명 령을 각 취소한다. 2.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. 피고가 2012. 6. 19. 원고에게 한 [별지] 기재 시정조치 및 공표명령을 각 취소한다.

【청구취지 및 항소취지】1. 청구취지 피고가 2012. 6. 19. 원고에게 한 [별지] 기재 과징금 부과처분, 시정조치 및 공표명령을 각 취소한다. 2.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. 피고가 2012. 6. 19. 원고에게 한 [별지] 기재 시정조치 및 공표명령을 각 취소한다.

【청구취지 및 항소취지】 1. 청구취지 피고가 2012. 6. 19. 원고에게 한 [별지] 기재 과징금 부과처분, 시정조치 및 공표명령을 각 취소한다. 2.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. 피고가 2012. 6. 19. 원고에게 한 [별지] 기재 시정조치 및 공표명령을 각 취소한다.

## 【이유】

- 】1. 제1심 판결의 인용 부분
-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"1. 처분의 경위"부터 "2.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, 가. 원고의 주장, 나. 관계 법령, 다.
- 인정 사실"까지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, 그 일부를 아래 "제2항"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위 각 해당 부분(제 1심 판결문 제2쪽 제5행~제18쪽 제1행, 다만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해당하는 '과징금 부과처분'에 관한 부분은 제외) 기재와 같으므로,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.
- 2. 고쳐 쓰는 부분
- 가.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4행의 "〈처분의 내용 및 근거 법령〉란 기재의 각 처분을 하였다.
- " 부분을 "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조치와 그 시정조 치를 받은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제64조 제4항 등에 따라〈처분의 내용 및 근거 법령〉란 기재의 각 처분을 하였다.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

- "라고 고쳐 쓴다.
- 나.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4~16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.

### [이유]

- 11. 제1심 판결의 인용 부분
-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"1. 처분의 경위"부터 "2.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, 가. 원고의 주장, 나. 관계 법령, 다.
- 인정 사실"까지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, 그 일부를 아래 "제2항"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위 각 해당 부분(제 1심 판결문 제2쪽 제5행~제18쪽 제1행, 다만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해당하는 '과징금 부과처분'에 관한 부분은 제외) 기재와 같으므로,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.
- 2. 고쳐 쓰는 부분
- 가.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4행의 "〈처분의 내용 및 근거 법령〉란 기재의 각 처분을 하였다.
- " 부분을 "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조치와 그 시정조 치를 받은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제64조 제4항 등에 따라〈처분의 내용 및 근거 법령〉란 기재의 각 처분을 하였다.
  - "라고 고쳐 쓴다.
- 나.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4~16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.

#### 【이유】

- 】1. 제1심 판결의 인용 부분
-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"1. 처분의 경위"부터 "2.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, 가. 원고의 주장, 나. 관계 법령, 다.
- 인정 사실"까지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, 그 일부를 아래 "제2항"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위 각 해당 부분(제 1심 판결문 제2쪽 제5행~제18쪽 제1행, 다만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해당하는 '과징금 부과처분'에 관한 부분은 제외) 기재와 같으므로,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.
- 2. 고쳐 쓰는 부분
- 가.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4행의 "〈처분의 내용 및 근거 법령〉란 기재의 각 처분을 하였다.
- " 부분을 "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조치와 그 시정조 치를 받은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제64조 제4항 등에 따라 〈처분의 내용 및 근거 법령〉란 기재의 각 처분을 하였다.
  - "라고 고쳐 쓴다.
- 나.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4~16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.